

긴급입찰 사유서

☐ 사업명 : 연천학생야영장 복합모험활동 체험시설 제작, 설치

☐ 긴급입찰 관련 법령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5조 제4항

1. 제19조제2항에 따른 재공고입찰의 경우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정책상 예산의 조기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국가사업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다른 사업과 연계되어 사업의 일정조정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4. 긴급한 행사 또는 긴급한 재해 예방·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그 밖에 제2호 또는 제3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입찰을 긴급히 입찰공고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 긴급사유 및 법적근거

○ 긴급입찰 사유: 2025년 예산조기 집행 및 재공고에 따라 긴급 입찰 요청함

○ 법령근거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5조제4항 제2호 및 제3호

○ 공고게시요청기간: 15일

경기도연천교육지원청연천학생야영장

